

『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가.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(과기부 고시 제2020-40호, 2020.8.27.)
- 나.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 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강소특구 지원사업 및 조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제6조)
- 라. 기술핵심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마. 강소특구 지원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4조)
- 바. 수혜자의 의무 및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,
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,
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불임)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구미시가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지정(과기부 고시 제 2020-40호, 2020.8.27.)됨에 따라 상위법에 의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써,
-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성과 및 유망기술의 사업화,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,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,
- 향후 대학, 연구소, 기업 등 지원 수혜기관의 지역 재투자 및 환원 등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